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04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, 시장이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“상품권,”을 삭제함(안 제10조제2항제2호).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상품권,”을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시민”을 “서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“시장””을 ““시장”이라 한다”로, “서울시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학교밖청소년”을 “학교 밖 청소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가족 돌봄청년
9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·청소년

10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
11.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

제10조제2항 중 “경품을 지급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참여자의 참여실적·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
2. 추천,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학습 도구 등 경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<u>학교밖청소년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학교 밖 청소년</u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 따른 <u>가족돌봄청년</u></p> <p>9. 「<u>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제1항 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<u>아동·청소년</u></p> <p>10. 「<u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</u>」 제15조제1항제9호의 <u>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</u></p> <p>11. <u>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</u></p> <p>12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0조(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</u>-----.</p> <p>1. <u>참여자의 참여실적·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</u></p> <p>2. <u>추첨,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학습 도구 등 경품</u></p>